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6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김기웅

강선영 · 엄태영 · 김소희

구자근 · 김상훈 · 권영진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 부(이하"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 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출국사실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 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 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및 검역 의무)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6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	
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	
하여야 하고, 신체·의류·휴대	
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	
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	
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	
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가축방역사	3의2.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
4. ~ 8. (생 략)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u>검사원</u>
	4. ~ 8.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